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

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 세세항:(110)인건비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교	초
3000	경제개발비	880,000	800,000	80,000	[국 0]	[도 338,387]	[교 0]	[초 0]
3300	국토자원보존개발비	880,000	800,000	80,000	[국 0]	[도 338,387]	[교 0]	[초 0]
3320	치수및재해대책	880,000	800,000	80,000	[국 0]	[도 338,387]	[교 0]	[초 0]
3325	치수사업특별회계	880,000	800,000	80,000	[국 0]	[도 338,387]	[교 0]	[초 0]
100	경상예산	244,330	212,688	31,642	[국 0]	[도 27,387]	[교 0]	[초 0]
110	인건비	196,705	165,623	31,082	[국 0]	[도 27,387]	[교 0]	[초 0]
	101 인건비	196,705	165,623	31,082				
		7,800	7,200	600	03 정액급식비			
					○청원경찰 정액급식비	130,000원x5명x12월	=	7,800
		7,200	7,200	0	04 교통보조비			
					○청원경찰 교통보조비	120,000원x5명x12월	=	7,200
		11,229	8,755	2,474	05 명절휴가비		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청원경찰 명절휴가비 89,826,000원x1.5/12 = 11,229
		18,714	14,591	4,123	06 가계지원비 ○청원경찰 가계지원비 89,826,000원x2.5/12 = 18,714
		5,927	4,864	1,063	07 연가보상비 ○청원경찰 연가보상비 89,826,000원x19/288 = 5,927
		145,835	123,013	22,822	08 기타직보수 ○하천관리 청원경찰 - 봉급 1,462,000원x5명x12월x1.024 = 89,826 (도) 27,387 (시) 62,439 - 기말수당 89,826,000원x2/12 = 14,971 - 정근수당 89,826,000원x1.9/12 = 14,223 - 가족수당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· 배우자 30,000원x5명x12월 = 1,800
					· 부양가족 20,000원x4명x12월 = 960
					- 정근수당 가산금(25년이상) 130,000원x5명x12월 = 7,800
					- 시간외 근무수당 5,506원x5명x28시간x12월x1.024 = 9,473
					- 휴일근무수당 40,659원x5명x64일x1/2x1.024 = 6,662
					- 감독자수당(조장) 10,000원x1명x12월 = 120
120	경상적경비	47,625	47,065	560	
	201 일반운영비	27,925	27,965	△40	
		27,925	27,965	△40	01 일반운영비
					○ 1. 일반수용비
					-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100,000원x40건 = 4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

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- 분할측량 수수료 155,000원x80필지 = 12,400
					- 경계 복원측량 255,000원x30필지 = 7,650
					- 폐천부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,000원x200필지 = 200
					- 하천점용료 부과업무 서식 유인 10,000원x100부 = 1,000
					○5.피복비
					- 청원경찰 근무복 110,000원x5명x2회 = 1,100
					- 청원경찰 모자 및 견장 15,000원x5명x1회 = 75
					○6.급량비
					- 재해대책 하천관리 야간근무자 급식 5,000원x5명x60일 = 1,500
	202 여비	10,400	9,800	600	
		2,000	2,000	0	01 국내여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300)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:(3320)치수및재해대책

세항:(3325)치수사업특별회계

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
					○하천정비 및 관리업무추진여비 40,000원x5명x5일x2회	=	2,000
		8,400	7,800	600	02 월액여비 ○하천감시원 업무추진여비	140,000원x5명x12월	= 8,400
	204 직무수행경비	9,300	9,300	0			
		6,300	6,300	0	02 직급보조비 ○청원경찰 직급보조비	105,000원x5명x12월	= 6,300
		3,000	3,000	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○청원경찰 대민활동비	50,000원x5명x12월	= 3,000
200	사업예산	625,919	563,528	62,391	[국 0 도 311,000 교 0] [시 314,919 채 0]		
210	보조사업	625,919	563,528	62,391	[국 0 도 311,000 교 0] [시 314,919 채 0]	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625,919	563,528	62,391			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
		622,000	560,000	62,000	01 시설비	
					○기성제 및 수문정비(25개하천)	
					262,000,000원x1식	= 262,000
						(도) 131,000
						(시) 131,000
					○죽장 자호천외 2개소 하천정비공사	
					360,000,000원x1식	= 360,000
						(도) 180,000
						(시) 180,000
		3,919	3,528	391	03 시설부대비	
					○하천정비공사 시설부대비	
					622,000,000원x0.63/100	= 3,919
	400 예비비등	9,751	23,784	△14,033		
	410 예비비	9,751	23,784	△14,033		
	801 예비비	9,751	23,784	△14,033	○예비비	9,751,000원 = 9,751
	세 출 합 계	880,000	800,000	80,000		